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45
----------	-------

발의연월일 : 2026. 2. 6.

발 의 자 : 전용기 · 이학영 · 박홍근
진성준 · 김주영 · 윤준병
이연희 · 안태준 · 정준호
문진석 · 이건태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업들이 현금이 아닌 자사 포인트나 쿠폰 지급 등의 보상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배상이라기보다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되는 ‘피해구제 노력’의 범위에서 현금 외의 포인트 · 물품 교환권 등은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제8호 단서, 제39

조의2제3항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현금 외에 특정 물품이나 용역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재화나 용역의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지급한 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4항제8호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 ③ (생 략)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단서 신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7. (현행과 같음) 8. ----- ----- ----. 다만, 현금 외에 특정 물품이나 용역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재화나 용역 의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지 급한 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 다.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 ② (생 략) <신 설>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손해 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 조제4항제8호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